

## 2021년 제2회 부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재공고

부산광역시에서는 임기제공무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(재공고)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.

2021년 3월 29일  
부산광역시인사위원회위원장

### 1. 근거법령

- 지방공무원법(법률 제17894호, 2021.1.12.)
- 지방공무원 임용령(대통령령 제31380호, 2021.1.5.)
-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(행정안전부 예규 제126호, 2020.9.22.)
- 부산광역시 공무원 인사규칙(부산광역시 규칙 제4035호, 2020.11.25.)

### 2. 임용예정 분야 및 인원

임용분야	근무예정부서	임용등급	인원	임용기간
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(의사)	*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	시간선택제 ‘가’급 (주35시간)	1명	임용약정일 ~ ‘21.12.31.
농산물 분석			2명	①임용약정일 ~ ‘22.9.13. ②임용약정일 ~ ‘21.12.31.
대기환경	보건환경연구원	** 한시임기제 6호 (주35시간)	1명	임용약정일 ~ ‘21.12.13.
악취소음방사능			1명	임용약정일 ~ ‘22.2.28.
실내공기질			1명	임용약정일 ~ ‘22.10.31.

\* 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: 임용일로부터 ‘21.12.31.까지 ※ 예방접종 진행 상황에 따라 연장 가능

\*\* 한시임기제 : 임용일로부터 ~ 육아휴직 기간까지

### 3. 임용분야 주요업무

임용분야	주요업무
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(의사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</li><li>◦ 코로나19 예방접종 이상반응 상담</li><li>◦ 중증이상반응 신고사례 평가</li><li>◦ 구·군 예방접종센터 및 위탁의료기관 종사자 등 교육</li></ul>
농산물 분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경매 전 농산물 잔류농약 검사</li><li>◦ 유통 농산물 등 유해물질 분석</li></ul>
대기환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대기환경 중 미세먼지·중금속·이온성분 등의 시료채취와 기기분석 관련 업무</li></ul>
악취소음방사능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자동소음측정망 운영 및 평가</li><li>◦ 지정악취 물질 시료 채취 및 분석</li><li>◦ 환경방사능 시료채취 및 분석</li></ul>
실내공기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◦ 실내공기질(신축공동주택, 다중이용시설, 대중교통차량) 조사</li><li>◦ 지하역사 공기질 측정망 운영</li><li>◦ VOCs등 기기분석</li></ul>

### 4. 응시 자격

#### 가. 공통요건(결격사유 등)

-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규정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
-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65조 및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
-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를 받은 자

## <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 >

1. 피성년후견인
  2.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
  3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4.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  5.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
  6.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
- 6의2.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「형법」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3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- 6의4.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·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  
(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)
- 가.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
  - 나. 「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·청소년대상 성범죄

\* 「형법」 제303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) 또는 「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」 제10조(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)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☞ 2019.4.16. 이전에 발생한 행위에 적용

7.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8.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

## <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(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) >

-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.
1.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, 파면 또는 해임된 자
  2.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
-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, 파면,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,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(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.
1. 공공기관
  2.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
  3.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
  4.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·단체

## 나. 분야별 자격요건(기준일 : 면접시험 예정일)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격요건
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 (의사)	‘가’급 (시간선택제 임기제)	<p>1. 의사 면허 취득 후, 2년 이상 관련 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p>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연구기관, 의료기관 등에서 보건·의료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 <p>▶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감염내과, 신경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</li> <li>- 역학 분야 관련 논문실적이 있는 사람</li> </ul>
농산물 분석	6호 (한시임기제)	<p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4.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, 대학교 등에서 농산물 분석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 <p>▶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자연계열학과, 화학과, 농산물 관련학과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위 취득자</li> </ul>
대기환경	6호 (한시임기제)	<p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. 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3. 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4. 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, 대학교 등에서 환경(대기)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 <p>▶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(공학)과, 대기학과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위 취득자</li> </ul>

임용분야	임용직급	자격요건
악취소음 방사능	6호 (한시임기제)	<p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, 대학교 등에서 환경(대기, 악취, 소음 등)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 <p>▶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(공학)과, 대기과학과, 화학과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위 취득자</li> </ul>
실내공기질	6호 (한시임기제)	<p>※ 다음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전문대학 졸업자등으로서 졸업 후 2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2년 6개월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li>7급 이상 또는 7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서 1년 이상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</li> </ol> <p>▶ 경력인정 범위 :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, 기업체, 대학교 등에서 환경(대기)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경력</p> <p>▶ 우대사항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- 환경(공학)과, 대기학과 등 임용 분야 주요업무와 관련성이 인정되는 학위 취득자</li> </ul>

\*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(시간선택제채용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을 채용하는 경우는 10년)이 경과되지 않아야 함 (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항)

## 5. 시험방법

### 가. 1차 시험 : 서류전형

- 응시자의 자격·경력 등이 기준에 적합한지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판단
- 단,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일 경우 심사항목 및 배점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결정할 수 있음

### 나. 2차 시험 : 면접시험

- 면접시험 평정표에 의거 개별면접
-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개별면접 실시
- 5대 평정요소에 의거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
  - ※ 5대 평정요소 :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, 전문지식과 응용능력, 의사표현의 정확성·논리성, 예의·품행·성실성, 창의력·의지력·발전가능성

## 6. 보수 수준

### 가. 시간선택제 임기제(주40시간 근무 기준)

구분	상한액	하한액	비고
5급(상당)	-	61,684천원	봉급액 외 급여(각종 수당)는 「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- ※ 연봉 협상시 하한액의 120% 이내 조정 가능하며, 특별한 조정 사유가 있을 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하한액의 120% 이상 조정 가능

### 나. 한시임기제(주40시간 근무 기준)

구분	봉급액	비고
6호	월 2,327,100원	봉급액 외 급여(각종 수당)는 「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」에 따라 별도 지급

- ※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 2에 따라 고용보험(실업급여)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(단,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)

## 7. 시험 일정(예정)

시험공고	응시원서 접수기간	시험구분	시험일시	시험장소	합격자발표
'21.3.29.(월)	'21.4.13.(화) ~ 4.15.(목)	서류전형	'21.4.21.(수)	10층 회의실	'21.4.22.(목)
		면접시험	'21.4.26.(월) ~ 4.30.(금)	시청 회의실	'21.5.7.(금)

※ 시험일, 면접장소, 합격자발표일 등은 변경될 수 있음

## 8.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

- 가. 원서교부 :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채용공고란 게시([내려받아 사용](#))  
나. 접수처 :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(10층)  
다. 접수방법 : 접수기간 내 접수처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 제출

※ 접수시간은 09:00~18:00(점심시간 제외), 토·일요일 및 공휴일은 접수 불가

- 우편접수는 마감일 우편소인에 한하여 유효함  
(우47545) 부산광역시 연제구 중앙대로 1001(연산동) 부산광역시 인사과 인재채용팀
- 우편 접수 시는 ‘우체국 통상환증서(응시수수료)’와 ‘반신용 봉투’를 함께 우송  
반신용 소봉투에는 반드시 ‘등기용 우표 부착’ 및 수신인 주소·성명 기재

## 9. 제출서류

### 가. 공통사항(필수 제출)

- ① 응시자 제출서류 목록표 <별지 제1호 서식>
- ② 응시원서 1부 <별지 제2호 서식>
  - ▶ 응시수수료 : 5급(상당) 10,000원, 6~7급(상당) 7,000원, 8~9급(상당) 5,000원
    - 부산광역시 수입증지(시청 2층 행복민원실에서 구입) 날인
    - 우편 제출할 경우 수입증지 대신 ‘우체국 통상환증서’로 대체
- ③ 이력서 1부 <별지 제3호 서식>
  - ▶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 반드시 첨부(증빙자료가 없는 경우 인정되지 않음)
- ④ 자기소개서 1부 <별지 제4호 서식>

- ⑤ 직무수행계획서 1부 <별지 제5호 서식>
- ⑥ 대학 이상의 학위증서(졸업증명서) 1부
  - ▶ 대학교(전문학사) 이상은 모두 제출하며, 최종 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 졸업증명서 제출
- ⑦ 경력증명서 또는 재직증명서 1부
  - ▶ 발행기관(단체)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 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
  - ▶ 발행기관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등 기관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첨부
  - ▶ 근무부서, 직책, 담당업무, 재직기간 등이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경력 인정(불명확할 경우 불인정)되며 경력기간 산정은 면접시험 최종일 기준
  - ▶ 비정규직 또는 비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 반드시 ‘주당 근무시간’을 명시하여야 하며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임용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에 포함되지 않을 수 있음
- ⑧ 국민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1부
  - ▶ 국민건강보험공단([www.nhis.or.kr](http://www.nhis.or.kr)) 홈페이지에서 출력 또는 공단 방문 발급
  - ▶ 경력증명서 경력을 검토할 수 있도록 “보험가입 전체기간” 발급
- ⑨ 개인정보 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 동의서 1부 <별지 제6호 서식>
- ⑩ 증명사진 1매 : 3.5×4.5cm

## 나. 개별사항(해당자에 한하여 제출)

- ① 업무관련 자격증 또는 외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사본
  - ▶ 당해 검정시험기관의 정규(정기)시험 성적만을 인정하고, 정부기관·민간회사·학교 등에서 승진·연수·입사·입학(졸업)등의 특정 목적으로 실시하는 수시·특별시험 등은 인정하지 않음
- ② 각종 대회 수상, 상훈 등 증빙자료
- ③ 학위·연구논문 사본, 저서, 특허등록, 기타 연구개발이나 본인작성 증명 성과물 각 1부
  - ▶ 학위논문 등의 경우에는 반드시 1매 이내의 요약서 첨부<자유서식>
  - ▶ 성과물은 경력인정 범위 내 작성되어야 하고 2점 이내로 한정
- ④ 지원분야 근무실적 및 특이사항 1부(A4 3매 이내)
- ⑤ 동일계통 학위(학과) 증명서 1부 <별지 제7호 서식>
  - ▶ 취득한 학위가 응시자격의 관련분야 학위(학과) 명칭과 상이한 경우 제출

## 다. 유의사항

- 응시원서 등의 기재 잘못으로 응시자 본인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착오 없이 작성
- 이력서에 기재한 내용이라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인정되지 않음
- 모든 증명서는 공고일 기준 6개월 이내(단, 어학능력은 2년 이내) 발행분에 한하며 제출서류 중 불명확한 부분에 대하여는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- 외국어로 기재된 증빙자료(학위, 경력증명서, 논문 등)는 반드시 한글번역본을 함께 첨부 ※ 최종합격 시 사실공증
- 입증자료는 사본으로 제출하며,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
※ 필요 시 원본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

## 10. 기타사항

-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 철저히 확인한 후 출원하기 바람
- 응시원서는 1개분야만 제출할 수 있고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음
- 제출서류에 허위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결정 후에도 합격을 취소할 수 있음
- 응시자(서류전형결과 적격자)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을 경우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함
-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
-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,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

- 최종합격자가 합격자 발표일로부터 6월 내에 임용 포기, 임용결격사유, 임용 후 퇴사 등의 사유로 결원을 보충 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합격기준에 적합한 자 중 차순위자를 추가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
  - ※ 차순위자가 동점일 경우 아래의 우선순위에 따라 선발함
    - ① 경력기간 ⇒ ② 자격증 유무 및 점수 순 ⇒ ③ 성과물 유무
- 합격자 발표 등 모든 일정은 시 홈페이지(busan.go.kr)의 채용공고란에 게시
- 본 임용시험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, 변경사항은 시험시행 7일 전에 시 홈페이지에 별도 공고
-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 바람
  - 응시 관련 : 부산광역시 인사과(☎051-888-1971)
  - 직무 관련

임용분야	문의처	임용분야	문의처
예방접종 이상반응 역학조사(의사)	코로나19 예방접종추진단 (051-888-3721)	농산물 분석 등 4개 분야	보건환경연구원 (051-309-2712)